

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

1. 피상속인 및 신고인(상속인) 인적사항				
피상속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신 고 인 (상속인)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전화번호			

2. 상속재산			
재산종류	소재지	수량(면적)	평가액

3.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
(상속회복청구의 소 [], 상속재산 분할 심판 [],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[])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		
신고인 제출서류	1.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서류 1부 2.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관한 서류 1부 3.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

- ※ 이 서식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9조제3항에 따른 서식입니다.
1. "2.상속재산"에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적습니다.
이 때 평가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.
2. "3.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"에는 해당되는 사유(상속회복청구의소, 상속재산 분할 심판,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)에 √표를 하고 세부내용을 적습니다.